제 10 호

최 고 공 고 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1월 30일까지 신고 바랍니다.
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담당자 : 장이지 문의전화 : 052-287-0506

성명 생년월일	주소	지연 신고사항
정 *화 1948-03-17	울산광역시 북구 화동3길 (화봉동)	사망
강 *자 1940-07-22	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(화봉동)	사망
김 * 1944-05-17	울산광역시 북구 화산로 (송정동)	사망

※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(「주민등록법」 제40조제3항)

2026년 11월 23일

송정동장 인